



문수로 푸르지오 어반피스 인터넷 청약 안내

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문수로 푸르지오 어반피스 관람은 온라인예약제로 운영됩니다

Check Point 1

청약 1순위 조건

문수로 푸르지오 어반피스 청약 1순위 조건을 확인하세요!

- ①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4개월 이상입니까?
- ② 지역별/면적별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합니까?
- ③ 만 19세 이상이며 울산광역시, 부산광역시,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세대주입니까?
- ④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(주택처분조건)입니까?

4가지 항목 모두 '예'일 경우 1순위 청약신청 가능

Check Point 2

우선공급 대상

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 및 거주기간을 확인하세요!

- ① 울산광역시 1년이상 거주 - 1순위 해당지역 청약접수
- ② 울산광역시 1년미만 거주 - 1순위 기타지역 청약접수
- ③ 울산광역시, 부산광역시, 경상남도 거주 - 1순위 기타지역 청약접수

※ 울산광역시 1년이상 거주자 우선공급 미해당자가 당해지역으로 접수 시 부적격처리
 ※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(연속 90일, 비연속 183일 초과)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기타지역으로 청약 접수(당해지역 접수 시 부적격처리)

Check Point 3

재당첨제한 확인

재당첨제한 기간 및 청약 통장을 확인하세요!

- ①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습니까? → 청약통장 미가입 시 청약신청불가
- ② 과거 5년 이내 청약하여 당첨된 사실이 있습니까? → '예'일 경우 1순위 청약신청불가
- ③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적이 있습니까? → 일반공급 1·2순위 청약

※ 재당첨제한 기간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

1순위 청약자격
요건 확인

- ① 만 19세 이상 울산광역시, 부산광역시, 경상남도 거주자 청약 가능 (단, 경쟁발생 시 울산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 우선)
- ② 청약통장 가입 후 24개월 이상 1순위 청약 가능
- ③ 1주택자 주택처분조건 1순위 청약 가능
- ④ 85㎡ 이하 : 가점제 75% 추첨제 25% / 85㎡ 초과 : 가점제 30% 추첨제 70%
- ⑤ 과거 5년 이내에 청약당첨사실이 없을 것

지역별 청약예치금

구분	울산광역시	부산광역시	경상남도	청약 가능 주택형
전용면적 85㎡이하	250만원	300만원	200만원	84㎡A, 84㎡B, 84㎡C
모든면적	1,000만원	1,500만원	500만원	84㎡A, 84㎡B, 84㎡C, 158㎡

인터넷청약 방법

• 청약전에 네이버 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.

순번	내용
1	청약Home 홈페이지 접속(http://www.applyhome.co.kr)
2	주택 선택 및 유의사항 확인 (문수로 푸르지오 어반피스)
3	주택형 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 조회
4	청약자격 확인 및 입력
5	연락처 등 입력 및 청약신청 내역 확인
6	청약 완료

청약일정 안내

구분	특별공급	일반1순위	일반2순위	당첨자발표
일정	2022. 4. 11(월)	2022. 4. 12(화)~13(수)	2022. 4. 14(목)	2022. 4. 20(수)
방법	인터넷 청약			개별조회 (청약Home로그인 후 조회)
장소	· 건본주택(정보취약계층에 한함) ·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	·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(PC: www.applyhome.co.kr / 스마트폰 앱: 청약Home) ※스마트폰 앱 : 구글플레이스토어, 앱스토어에서 '청약홈' 검색		

※ 상기 안내 내용은 단순 참고용으로,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1순위 청약가점제 신청 시 유의사항(필독)

- 1. 부양가족 체크 시 본인은 제외하시길 바랍니다. (기본점수에 반영됨)
- 2.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를 기준으로 산정하며, 만 30세 이전에 혼인 시 혼인신고일로부터 계산합니다.
- 3.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주소에 등재된 직계존속의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.
(예 : 장인, 장모의 주택도 포함, 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하지만, 부양가족수에는 제외하여야 함)
- 4. 입주자 모집공고상의 '무주택 판단기준'을 반드시 필독하시길 바랍니다.
※ 상기사항은 부적격 발생의 주요 요인으로 청약당첨 후 계약을 하여도 계약취소사유가 되며, 부적격 당청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가점항목	가점구분	이것만은 꼭!
무주택 기간 (총점 32점)	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 대상자 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입자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. ※ 2018.12.11 개정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. 가. 주택공급신청자 나.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.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 :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(예) 부모, 장인, 장모, 시부, 시모, 조부, 조모, 외조부, 외조모 등 라.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(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) :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(예) 아들, 딸, 사위, 며느리, 손자, 손녀, 외손자, 외손녀 등 마.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(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) :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(예) 전혼자녀 등 - '무주택세대구성원'이란,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무주택기간 산정 대상자 : 청약 신청자와 배우자 무주택 기간 산정 기준 - 청약 신청 연령 기준 만 30세 이후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을 '만 나이' 기준으로 선정하되,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함. 단, 청약통장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이후 무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- 만 30세 미만으로 미혼인 무주택자의 가점점수는 '0' 점임.	TIP 무주택기간산정은 한국식 나이가 아니라 '만' 나이로 계산해야 됩니다. 실수사례 예) 입주자 모집공고일 22. 12. 31 기준 1992년 12월 31일 생의 경우 -입력내용 : 한국식 나이로는 31세로 무주택 기간을 '1년 이상(4점)'으로 입력(X) -실제점수 : 실제나이는 만 30세로 무주택 기간을 '1년 미만(2점)'으로 입력(O)
	직계존속의 부양가족 인정기준 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세대주(분리된 배우자가 직계존속 부양시 그 배우자도 세대주여야함)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 ※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만 세대주이든 가능 만 30세 이상인 미혼자녀의 부양가족 인정기준 - 청약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 부양가족 산정사례 ※ 직계존속의 경우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된 경우임.	TIP 부양가족 산정 시 "청약자 본인은 제외"입니다. 실수사례 예)A씨의 사례 - 입력내용 : 단독세대주인데 본인을 부양가족수로 계산하여 '1명(10점)'으로 입력(X) - 실제점수 : 부양가족수는 '0명(5점)'으로 입력(O) 유의사항 - 부양가족수는 본인은 제외한 '주민등록상에 등재된 세대원'을 기준으로 하며,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 - 2018.12.11 개정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에 의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.
부양가족 수 (총점 35점)		
입주자저축 가입기간 (총점 17점)	청약통장 가입기간 -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, 청약통장 전환, 예치금액변경 및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(순위기산일)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함 - 실제 인터넷 청약 시에는 청약통장 가점기간 및 해당 점수를 자동 산정하여 부여함	

※ 상기 안내 내용은 단순 참고용으로,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